

21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탄소중
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 월 21 일

여 수 시 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여수시 조례 제1741호
붙임 여수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1부.

여수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50년까지 여수시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기후위기로부터 여수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지구환경을 보전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인 상태를 말한다.
2. “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3. “기후위기 적응”이란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높이는 등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5.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탄소중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그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기후행동에 대한 합리적 인식을 토대로 탄소중립 이행을 추진한다.
2. 기후위기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기반하고,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후위기로부터 영향을 받는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다.
3. 여수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공공기관, 기업 및 시민단체 등 모든 구성원이 협력하여 탄소중립 이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4.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4조(여수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시장은 시행 주체가 되는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탄소중립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고, 집행과정에서 시민, 사업자 및 민간 단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협조를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 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여수시의 탄소중립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여수시가 시행하는 탄소중립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탄소중립 이행 목표) 여수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여야 하고, 이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가기본계획, 전라남도 계획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건물, 수송, 에너지, 농·축·수산, 자원순환, 숲, 생활, 교육 등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여수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시장은 제8조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건물부문) ① 시장은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한다)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사업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친환경보일러, LED 등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이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수송부문)**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및 충전시설 조기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대중교통의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누구나 저렴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용도로 확대 및 이용 편의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에너지부문)** ① 시장은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보급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탈탄소 친환경에너지 전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시민·사업자 및 시민단체 등이 추진하는 자발적 에너지 전환 실천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13조(농·축·수산부문)** ① 시장은 친환경 농·축·수산 인프라 조성을 위해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농업 생산시설 구축과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수산 양식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와 전기·수소 등 친환경 농기계·어선 보급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자원순환부문) ① 시장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등 자원순환의 촉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수산단 스마트 물 관리 체제 도입,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공업용수 재이용 및 빗물 중수도 재활용 시설 구축 등 물 순환 체계 마련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숲부문) ① 시장은 가로변, 하천변, 갯벌 등에 등에 녹지, 산림 및 바다 숲 조성을 통하여 탄소흡수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목·녹지·산림·갯벌 등의 탄소흡수원 기능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불가피하게 수목·산림·갯벌 등 탄소흡수원을 훼손할 시에는 대체 탄소흡수원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생활부문) ① 시장은 생활 속 녹색생활 실천요령 제작·배포 등 시민이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할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17조(교육부문) ① 시장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환경 교육을 강화하여 시민·사업자 및 시민단체 등이 시의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 촉진자를 양성하여 이를 통해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 ③ 시장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일반 교양교육, 평생교육 과정 등과 연계한 환경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제18조(정의로운 전환) ① 시장은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 등의 현황과 노동 시장과 산업의 변화,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 대책과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정책 제안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과 취약계층에 대하여 그 특성을 고려한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탄소중립 시책 추진 및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탄소중립을 위해 시민·사업자·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시민의 생활 속 온실가스 배출 억제 실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포상) 시장은 온실가스 배출 억제 등 탄소중립 시책과 관련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사업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국가 등과의 협력관계) ① 시장은 탄소중립을 위해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해서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에 관한 정보교환·기술의 교류 등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탄소중립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여수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또는 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